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부득이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협의가 지연되어 중도금 납입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중도금 대출 일정

구분	최초	변경
1회차 납입일	2019. 11. 15(금)	2019. 12. 30(월)
2회차 납입일	2020. 03. 16(월)	2020. 05. 15(금)
3회차 납입일	2020. 07. 15(수)	2020. 09. 15(화)

※ 중도금 납입일 변경에 따른 고객님의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신청 시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이며, 사업주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부담) 하셔야 합니다.

2. 중도금 대출 신청기간안내

11일(월)	12일(화)	13일(수)	14일(목)	15일(금)	16일(토)
101,102동	103,104,105동	106,107,108동	109,110,111동	112,113,114동	미방문 세대

※ 견본주택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지정일자에 방문 요청 드립니다

3. 구비서류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본 내용과 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빠짐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① 필수서류 관련 당부사항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세대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 확인 후, 세대원 모든 분에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정정사항포함) 발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배우자와 분리세대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여 주시옵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자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정정사항포함) 반드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발급 부탁드립니다.

② 추가서류 관련 당부사항

-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분들께선 안내장에 나와 있는 추가 서류란에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무소득사실증명 및 연말정산용 2018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발급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 무소득사실증명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피부양자 자격으로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용 2018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만 발급 부탁드립니다.

③ 대출 신청인께서 분양권을 전매하셨을 경우

-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상기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